

질의일자 : 2011. 9. 21(수)

순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0921-1	<p>1. 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와 기존 근무기업의 재직증명서 제출로 인정이 가능한지요?</p> <p>2. 물류인프라-운송수단 평가지표의 배점은 “15점”이나, 평가방법의 기준점수는“10점”으로 기표되어 있습니다. 표기 오류인지 별도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p> <p>3. 공동수급체 대표기업이 총 물류비를 일괄 청구하는지 아니면, 구성업체별 청구하는지요? 또한, 대표기업이 일괄 청구한 경우 대표기업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업체별로 지급하는지요?</p> <p>4. 기타물량과 조달품목에 대한 배송처가 명시되지 않아 비용산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부분은 업체 선정 후 별도 협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단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p>	<p>1. 물류관련 업계 경력은 모두가 인정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와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제안요청서 <별첨 4>의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2. 평가방법의 기준점수와 배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자격증 소지자 평가지표”, “운송수단 평가지표”의 평가방법 기준점수는 표기 오류로서 배점과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될 사항입니다.</p> <p>3. 우리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36번” 질의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4. 우리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36번” 질의답변서를 참고하시고, 기타물량에 대한 별도 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p>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1-2	<p>1. 입찰참가자격조건으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하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조건에 필요한 허가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으로 참가할 수 있는지?</p>	<p>1.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유선 질의 결과,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의 경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의 등록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 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참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관련기관의 질의 또는 확인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